

## 화학물질안전원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우리 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 04. 18.

화학물질안전원장

###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채용분야 (코드)	채용인원	채용예정직무	근무지역
기간제	전문연구원 "마"급 (인체)	1명	• 살생물제 인체 유위해성 자료 검토	화학물질안전원 인천분원 (인천 서구 환경로42)
	전문연구원 "마"급 (효과·효능)	1명	• 살생물제 효과·효능 자료 검토	

###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기간제)
- 보수
  - 전문연구원 '마' 급(월 2,224,000원)(2025년 보수기준)
  -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4조(보수) 기준을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가. 공통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 및 18세 이상인 자(2007.12.31. 이전 출생자)
- 「환경부 공무원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5조(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나. 채용분야 응시 자격(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전문연구원 "마"급	가. 학사 학위 취득한 자 나.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전공:

- (인체) 생물학, 생화학, 분석화학 화학(공)학, (지구)환경과학, (해양)생명과학, 생명공학, 농화학, 약학, 독성학, 보건학, 수의학, 유전공학, 의학 등 관련 분야
- (효과·효능) 환경(공)학, 생명공학, (미)생물학, 농화학, 분석화학, 약학, 독성학, 보건학, 식품공학 수의학, 유전공학, 의학 등 관련 분야

#### 다. 우대 요건(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공통) 석사학위 소지자, 화학물질 및 농약 등록, 의약품 허가 업무 등 관련 업무 경험자
- (인체) 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인체 노출평가 등 관련 업무 경험자
- (효과·효능) 살충제 효과·효능 시험 등 관련 업무 경험자
  - 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명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sup>1)</sup>, 장애인<sup>2)</sup>,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sup>3)</sup>,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sup>4)</sup>

-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5점 또는 10점 추가 가산점 부여)

☞ 2개 이상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유형 내 중복가산 불가하고,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1호: 10점, 2호: 5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2,4호: 10점, 3,5호: 5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1호: 10점, 2,3호: 5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1,2호: 10점, 3호: 5점)

② **장애인:** 서류전형 5점 부여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제출

③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서류전형 5점 부여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5점 부여

⇒ 해당사실 확인 증명서 제출

## 라. 응시 제한

- 환경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년 4월 18일(금) ~ 2025년 4월 27일(일), 18:00시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jh1031@korea.kr)

- 접수 관련 문의 : 032-560-8619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

※ 위 접수기간 내 접수된 건만 유효함

※ 제출서류는 자필 서명 후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 제목은 '응시자 이름')

※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해진 내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5점~10점), 장애인(5점), 가산점 부여(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 서류전형 확인점검표에 해당 가산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전문성, 관련 근무경력, 학위, 연구논문, 관련 자격증 배점에 대한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기간제)근로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개별면접으로 진행하며,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단, 면접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단체면접(3~5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면접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최종 합격통지
  -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의 사유로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 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발표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5.04.18(금) ~ 04.27(일), 18:00	'25.05.02(금)	'25.05.08(목)	'25.05.16(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서류전형 확인 점검표 1부 <서식 제1호>
- ② 이력서 1부 <서식 제2호>
- ③ 자기소개서 1부 <서식 제3호>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4호>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제5호>
- ⑥ 결격사유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서식 제6호>
- ⑦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서식 제7호>
- ⑧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1부 <서식 제8호>
- ⑨ 주민등록표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1부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학위증명서(학사/석사 등) 1부
- ②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하며, 비상근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③ 연구 실적물 사본
- ④ 관련 분야 자격증 1부
- ⑤ 취업지원대상자 등 서류전형 가산점 대상 증빙서류 1부
- ⑥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서식 제9호>

## 8. 기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관련 자격사항 등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 032-560-86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1호>

## 서류전형 확인점검표(작성예시)

□ 성 명 : 000 (서명)

구분	요구사항	응시자 기재	증빙자료(첨부)
학력	※ <u>고졸 이상</u>	- 학사 졸업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전공	※ <u>환경, 화공, 안전공학 등</u>	- 환경공학 전공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자격증	- 지원 분야 (산업)기사 관련 자격증 ※ 해당자만 기재	- 00환경기사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담당업무 분야 경력	- 지원 분야 관련 경력 ※ 해당자만 기재	<관련경력> - 00 근무	- 경력증명서
서류전형 가산점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 ※ 해당자만 기재	- 해당 없음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빙 서류(해당자만)

※ '요구사항' 및 '응시자 기재' 음영란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이 력 서

근무지	화학물질안전원	채용분야	<i>※ 전문연구원 "마"급(코드)로 작성</i>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b>전공(학과)명</b>	<b>학위종류</b>	<b>졸업연월</b>	
	<i>※ 학교는 기재하지 않음</i>			
업무관련 경력사항	<b>근무기간( 년 월)</b>	<b>근무처(부서)</b>	<b>직위(직급)</b>	<b>업무내용</b>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업무관련 자격사항	<b>자격종목</b>	<b>발급기관</b>	<b>발급번호(취득일자)</b>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상실적	<b>내용</b>	<b>수여기관</b>	<b>수상년월일</b>	
	<i>※ 사내대회 수상 실적 등 증빙이 불가능한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i>			
병역	<b>병역 현황</b>		<b>복무기간</b>	<b>미필사유</b>
	<i>병역 필, 미필, 비대상 기재</i>			
서류전형 가산점대상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여부	장애인 여부
업무관련 특기분야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17.7월)에 따라 이력서에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은 기재 금지

#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색

## <작성내용>

1. 지원동기 및 채용예정 분야 관련 근무, 교육, 연구 등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본인이 맡은 주요역할, 주요내용 및 성과 등)
2.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대인관계능력 등 기술

## 【작성요령】

-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을 상세히 기재할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채용 및 채용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채용시 필요한 제반 정보 (제출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포함)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합격자(준영구), 불합격자(180일 이후 파기)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절차에 제한이 따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명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성 명 : 000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명 :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해당□/해당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해당□/해당없음□>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해당□/해당없음□>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해당□/해당없음□>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해당□/해당없음□>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해당□/해당없음□>

2025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서식 제8호>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